

정관

소관팀 : 준법감시/법무팀

2016. 01. 18 제정

2016. 02. 17 개정

2016. 03. 11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03. 23 개정

2018. 03. 22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03. 25. 개정

2019. 11. 22. 개정

2020. 03. 30. 개정

2021. 03.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당행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영문으로는 KakaoBank Corp.이라 하고, 이하 "당행"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 03. 30.>

제 2 조(목적) 당행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은행법」제27조에 의한 은행업무
2. 「은행법」제28조에 의한 겸영업무
3. 「은행법」제27조의2에 의한 부수업무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되는 업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당행은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당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① 당행의 광고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akaobank.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광고는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6 조(1주의 금액) 당행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행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80,000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및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당행이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21. 03. 30.>

② 당행은 보통주식과 배당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위 언급된 주식들 중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함)을 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③ 당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단, 당행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④ <삭제 2019. 11. 22.>

⑤ <삭제 2019. 11. 22.>

⑥ 당행은 주권 및 신주인수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19. 11. 22., 개정 2021. 03. 30.>

제 9 조(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당행이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당행이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거나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당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전환주식) ① 당행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은행법 기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상환주식) ① 당행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당행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당행이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행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당행은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행이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당행이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2 조(신주인수권) ① 당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개정 2021. 03. 30.>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당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당행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다수인(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5.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 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④ 제2항의 경우 당행은 「상법」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 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1. 03. 30.>

제 13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당행은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행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단, 당행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1. 22.>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03. 30.>

제 15 조의2(주주명부) ① 당행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2.>

② 당행은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30.>

③ 당행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0.>

제 16 조(주주명부의 기준일) ① <삭제 2021. 03. 30.>

② 당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7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당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당행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당행은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당행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 03. 30.>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당행의 경영혁신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당행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당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설 2021. 03. 30.>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03. 30.>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개정 2021. 03. 30.>

2. 당행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21. 03. 30.>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행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당해 임직원이 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거나 문책처분 요구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4. 당행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7 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당행은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21. 03. 30.>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 03. 30.>

⑤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당행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사채의 발행) ① 당행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당행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1. 03. 30.>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03. 30.>

제 20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당행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30.>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1. 03. 30.>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1. 03. 30.>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03. 30.>

제 20 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행은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2., 개정 2021. 03. 30>

제 21 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① 당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당행은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3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당행이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당시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재조정의 조건 및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내용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2.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 22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를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제 4 장 주주총회

제 23 조(소집시기) ① 당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4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0.>

제 26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0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당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행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

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당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의 전일까지 당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4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5 조(이사회 구성) ① 당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은행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당행에 4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다.

제 36 조(이사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만, 당행 이사로 선임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그 외 관련법령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당행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당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를 제외한다)

2. 그 외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 37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연임 시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⑤ 사외이사는 당행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03. 30.>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20. 03. 30.>

제 39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0 조(대표이사 및 이사회위원장 등의 선임) ① 당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 03. 30.>

②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41 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당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42 조(사외이사의 성실의무) 사외이사는 회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당행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삭제 2021. 03. 30.>

제 44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당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당행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당행은 분기 중 경영성과를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03. 30.>

⑥ 당행의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⑦ 이사회는 소집·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정한다.

제 46 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7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 조(위원회) ① 당행은 이사회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위험관리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 <삭제 2021. 03. 30.>

②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5조 제2항,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 및 감사위원회의 그룹장 등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 외의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9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을 제외한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5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행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해임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30.>

③ 감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1인 이상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1. 03. 30.>

⑤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는 당행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본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행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및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1. 03. 30.>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및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당행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1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당행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신설 2021. 03. 30.>

⑨ 감사위원회는 당행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0.>

제 52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53 조(사업년도) 당행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당행의 최초 사업연도는 당행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54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당행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본변동표
5. 현금흐름표
6. 주식
7. 연결재무제표
8. 그 밖에 당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 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이익금의 처분) 당행은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6 조(주식의 소각) 당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당행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당행이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당행은 각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4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8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행에 귀속한다.

부 칙(2016. 01. 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위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다. 또한, 은행업 본인가 신청 전에 적용 법률을 반영하여 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다.

제 2 조(발기인) 회사의 정관을 위와 같이 정하고 발기인 전원이 아래와 같이 2016. 01. 18 기명 날인하다.

발기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대표이사 김남구 (인)

발기인: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임지훈 (인)

부 칙 (2016. 02. 1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1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03.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03. 2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등록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 제6항, 제14조 제4항, 제20조의2는 당행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5조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 (2020. 0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관련법령상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당행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